

# 전동 킥보드 및 전동휠 이용에 관한 주의 및 협조 안내

(2019. 9. 4., 안전팀)

## 1 현황 및 주의안내

- 최근 원내에서 전동 킥보드 및 전동휠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히, 무면허 및 음주 운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필요.

## 2 법적근거

-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나항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/전동휠(정격출력 0.59kW 미만)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차도로만 다녀야 함.  
(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음)
- 전동 킥보드/전동휠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 되어야 하며,  
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혹은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증이 필요함

## 3 교통법규 위반 시

- 인도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
- 무면허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
(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, 16세 미만은 이용불가)
- 음주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 운행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징역 5년, 벌금 2000만원(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)
- 자전거 도로 운행 시 50cc미만 오토바이와 동일 취급해 원칙적으로 운행금지

## 4 전동 킥보드 탈 때 안전수칙

- 안전모,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, 법정 속도인 25km/h 이하로 주행
- 운전 중 스마트폰은 물론 이어폰 사용 절대 금지
- 주변 시야가 잘 보이는 주간에만 이용하되, 부득이하게 야간에 주행을 할 때에는 라이트를 켜야하며, 주행 시 안전을 위해 반사체를 킥보드 앞·뒤에 부착

행정처장